

# 무보험자동차상해의 장해평가에 관한 연구

양 회 영\*

<차례> \_\_\_\_\_

- I. 서론
- II. 무보험자동차상해 장해평가의 문제점
- III. 무보험자동차상해의 성격
- IV. 개선안
- V. 결론

주제어: 무보험자동차상해, 자동차보험 보험금지급기준, 장해평가방법,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방법, 장해보험금

<국문초록>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상해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는 보험종목이다. 무보험자동차상해의 보험금은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정되는 금액을 보상한다. 보험금지급기준은 자동차보험의 약관에 편입되어 약관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 장해보험금은 월소득에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하고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중간이자 공제계수인 라이프니츠계수를 곱하여 산정하고 있다. 현행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상해 장해평가방법은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 중 옥내와 옥외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간이 장해평가방법을 따르고 있다.

실무에서는 무보험자동차상해의 보험금지급기준이 장해평가방법에 있어서 맥브라이드식 간이 장해평가방법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에서 배제된 추상장해, 후각장해 등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고 있다. 무보험자동차상해의 장해평가지 국가배상법 등 타법에 의한 장해평가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는 판례와 논리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회사는 여전히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에서 배제된 장해에 대해서는 장해보험금 지급을 꺼리고 있다.

무보험자동차상해는 보험금지급방식이 실손보상의 형태를 취하고는 있으나, 배상책임보험이 아니고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지급시에 합의서의 작성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회사는 보험금지급후 발생하는 대위권을 이유로 관행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오고 있다.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보험금 지급시 합

\* 금융보험학박사, 전주대학교금융보험학과 겸임교수, 금호손해사정(주)대표이사, 신체손해사정사  
- 논문접수일(2016.6.1), 심사개시일(2016.6.10), 게재확정일(2016.6.28)

의를 했다는 이유로 피보험자의 추가 청구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것 또한 문제가 있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상해의 장해평가방법이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에 의한 평가방법도 인정되는지 여부, 판례의 경향은 어떠한지, 그리고 실무에서 무보험자동차상해 보험금 지급시 피보험자와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타당한 행위인지, 그리고 피보험자 보호 등을 위한 약관의 개선방안 등에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있고, 이의 해결을 위한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다. 조만간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의 불합리한 점 등을 개선한 새로운 장해평가방법이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로운 장해평가방법이 개선되어 약관에 편입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동안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에 나와 있지 않은 추상장해 등의 장해보험금은 피보험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하고 누수 될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당장 실현가능한 대안으로 무보험자동차상해의 보험금지급기준에서 장해평가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맥브라이드식 후유장해평가방법에 따라 일반의 옥내 또는 옥외근로자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부상 치료 진단을 실시한 의사 또는 해당과목 전문의가 진단 판정한 타당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한다는 규정에서, “맥브라이드식 후유장해평가방법에 따라 일반의 옥내 또는 옥외근로자를 기준으로”라는 문구를 삭제할 것을 제안하였고, 무보험자동차상해 보험금지급시 불필요한 합의서 작성 관행을 폐지할 것과 감독기관의 조치 등을 제안하였다.

## I. 서론

자동차보험의 기본 담보종목의 하나인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는 보험종목이다.<sup>1)</sup>

무보험자동차상해 보험금지급기준은 대인배상 보험금지급기준과 동일하며<sup>2)</sup> 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인정한다. 무보험자동차측에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나 상대방의 무자력 등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을 때, 그에 상당한 금액을 보상

1) 실무에서는 무보험차상해, 무보험자동차상해, 무보험차담보, 무보험상해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약관상 규정된 정식 명칭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이다. 이하 약칭으로 “무보험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도 같은 뜻으로 혼용하여 같이 쓰기로 한다.

2)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지급기준은 동일하다.

하려는 것이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의 취지이나, 상해보험의 특성상 소송판결금액까지 인정하기는 제도적으로 곤란하기 때문에 지급기준액을 인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sup>3)</sup>

대법원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의 보험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의 배상의무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위험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보통약관에 정한 보험금 산정기준<sup>4)</sup>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제한적으로 인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였고,<sup>5)</sup>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에 있어서 그 보험금액의 산정기준이나 방법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 아니어서 명시·설명 의무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결하였다.<sup>6)</sup>

결국 무보험자동차상해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은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의 성격과 상품의 도입 취지 등에 의하면, “확정판결금액”까지 담보하는 대인배상과는 달리 보험금지급기준상의 금액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상해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하면, 장해<sup>7)</sup>평가의 경우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sup>8)9)</sup>에 의한 노동능력상실률만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추상장해와 후각장해 등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에 누락되어 있는 장해의 경우 그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무상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무보험자동차상해의 장해평가방법으로 맥브

3) 김광국, 「자동차보험대인손해사정론」, 보험연수원, 2015, 157면.

4) 자동차보험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을 의미한다.

5)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55284 판결.

6)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7302 판결.

7) 장해의 정의에 대하여 장애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장애(impairment)는 신체적 불구 또는 결함으로 이해하고, 장해(disability)는 법적인 개념으로 장애로 인한 손해가 있는 경우로 해석하려는 견해가 있으나, 실무적으로 장해와 장애는 특별한 구별 없이 혼용되어 쓰이고 있고, 인용되는 문헌에 따라 달리 쓰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본고에서도 혼용하여 쓰기로 한다.

8)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이란 미국 오클라호마 의과대학 정형외과의 맥브라이드(Earl Duwain McBride, 1891~1975) 교수가 저술한 ‘노동능력상실 평가와 배상 가능 손상의 치료 원칙(Disability Evaluation and Principles of Treatment of Compensable Injuries) 중 노동능력상실 평가에 관한 내용을 통칭하는 것이다. (출처 : 자동차보험진료수기분쟁심의회,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 가이드」, 2005, 6면.)

9)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은 약관에 의하면 “맥브라이드식 후유장해평가법”이라 칭하고 있으나, 실무에서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또는 “맥브라이드식” 등으로 부르고 있다. 의미상에 있어서 차이가 없으므로 혼용하여 쓰기로 한다.

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만이 유효한 것인지, 다른 방법에 의한 평가방법도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판례와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고, 실무상 무보험자동차상해에서 관행적으로 작성하고 있는 합의서가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피보험자 보호를 위한 약관의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II. 무보험자동차상해 장해평가의 문제점

### 1.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 이외의 다른 장해평가방법 배제

무보험자동차상해 보험금지급기준의 장해상실수익액 산정방법에 의하면, “피해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피해자의 월평균현실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계수를 곱하여 산정함. 다만, 소득의 상실이 없는 경우에는 치아보철로 인한 후유장해<sup>10)</sup>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함.”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하여는 “맥브라이드식 후유장해<sup>11)</sup> 평가방법에 따라 일반의 옥내 또는 옥외근로자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부상 치료 진단을 실시한 의사 또는 해당과목 전문의가 진단 판정한 타당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며, 그 판결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무보험자동차상해와 달리 대인배상의 지급보험금은 소송시 확정판결금액까지 담보<sup>12)</sup>하고 있고, 소송의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의 판단은 신체감정절차에 따라 확정되는데 신체감정의사의 장해평가방법은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에 한정하지

10) 치아결손의 장해에 대하여는 일본에서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출처 : 이윤호·이천성, 「한일 자동차손해배상비교」, 한국손해사정사회, 2007, 139면.)

11) 약관에서는 “후유장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장해”와 의미상 차이는 없다.

12)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10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생략

② 소송(민사조정, 중재를 포함)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자연배상금을 포함)을 제1항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봅니다.

않고 있다.<sup>13)</sup>

대인배상도 약관에서는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을 따른다고 규정하여 무보험자동차상해나 대인배상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대인배상은 소송판결금액까지 배상하고, 소송에서는 국가배상법이나 AMA 평가방법 등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이 아닌 다른 장해평가방법도 채택하고 있어서 명백한 차이가 있다.

무보험자동차상해의 성격상 지급보험금을 보험금지급기준상의 금액으로 한정하는 것이 유효하고, 그 보험금지급기준이 장해평가방법으로 맥브라이드식이나 다른 장해평가방법을 채택하더라도 문제는 없다. 실무에서는 보험금지급기준에 정한 맥브라이드식 이외의 다른 장해평가방법에 따른 장해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판례에서는 무보험자동차상해의 장해평가방법으로 맥브라이드식이 아닌 경우도 인정을 하고 있다.

## 2. 장해보험금 지급시 불필요한 합의서 작성

무보험자동차상해 보험금 지급시 실무에서는 관례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있다. 합의서는 보험금지급 이후 피보험자의 이의제기에 대비하기 위한 것과 추가 청구를 막기 위한 것과 대위권 행사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사용하는 무보험자동차상해의 합의서 내용은 자동차사고의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피해자의 보험자인 보험회사와 합의하면서 ①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현재까지 일체의 손해배상금을 수령 또는 합의한 사실은 물론 가해자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사실이 없음 ② 피해자는 보험회사와 체결한 자동차보험계약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의 약

13) 맥브라이드표도 신체장애가 분야별로 편중되어 있거나 누락되어 있고, 직업 분포가 편중되어 있을 뿐 아니라 오늘날의 직업 형태에 맞지 않고, 뒤떨어진 의학수준에 기초하였다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지만, 장애와 신체부위를 아주 상세하게 분류하여 이에 대응한 상실률을 백분율로 표시하고 있고, 주로 사용하는 손과 그렇지 않은 손을 구분하고 있을 뿐 아니라, 비의학적 요소인 직업과 연령에 따른 수정이 가능하여 비교적 노동능력상실률의 이론에 가까운 상실률을 정하고 있는 장점이 있고, 또 이를 대체할 대안의 부재로 실무에서는 맥브라이드표를 원칙적 평가기준으로 적용하여 신체장해를 판정하고 있고 맥브라이드표를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은 국가배상법 시행령상의 별표를 이용하여 이를 보완하고 있다. (출처 : 서경희, “맥브라이드방식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과 연령의 고려 - 고령의 도시일용노동자를 중심으로 -”, 재판과 판례 15집, 대구판례연구회, 2007, 486면.)

정에 따라 아래 내용으로 보험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가해자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험회사에 양도하였으므로 이후 이에 관하여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여하한 사유가 있더라도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③ 향후 보험회사가 가해자측에 대위권 행사시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등의 사유로 대위권의 행사가 불가능할 경우 피해자는 보험회사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즉시 반환할 것 등을 주내용으로 한 인쇄된 부동산자로 작성되어 있다.

합의는 법률상의 용어가 아니나, 재판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간에 존재하는 분쟁을 사적으로 해결하는 약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쌍방이 상호 양보하여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이다.

특히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합의를 함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필요에 의해 손해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는 상태에서 처음의 주장액을 감하거나 더하는 상호 절충식으로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끝내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민법상의 화해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sup>14)</sup>

민법 제731조 (화해의 의의)에 따르면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32조 (화해의 창설적 효력)에 따르면 “화해계약은 당사자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733조 (화해의 효력과 착오)는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이 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배상책임보험과 성격이 다른 무보험자동차상해에서 합의당사자를 보험회사와 피보험자로 해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명백히 민법의 화해의 정의와 상해보험의 보험원리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14) 최병수, 「자동차보험 손해사정이론과 실무」, 현대정보문화사, 2000, 132면.

### Ⅲ. 무보험자동차상해의 성격

#### 1.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의 연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1992. 3. 1. 신설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특별약관으로 담보<sup>15)</sup>하였으나, 1995. 8. 1. 자동차보험제도개선에 기본담보종목<sup>16)</sup>으로 하면서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및 자기신체사고를 함께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후 1997. 8. 1. 약관 개정시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및 자기신체사고를 함께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조건을 강화하였다.<sup>17)</sup>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에 최초로 도입된 무보험자동차상해위험특별약관<sup>18)</sup>에 의하면 종합보험 대인배상지급기준<sup>19)</sup>에 의거 보상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당시의 종합보험 대인배상지급기준의 장해평가방법에 의하면 노동능력상실률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sup>20)</sup> 별표 시행령 후유장해등급표에 따라 1~3급의 경우 100%에서 14급의 경우 5%까지 노동능력상실률을 차등 지급하도록 인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후유장해등급표에 의해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던 보험금지급기준이 그대로 큰 변화 없이 운용되다가 1986. 9. 8. 자동차보험약관의 개정으로 현행 보험금지급기준과 같이 장해평가방법이 맥브라이드식에 의한 간이 장해평가방법으로 변경되었다. <sup>21) 22)</sup>

과거의 1986. 9. 8. 약관에 따르면 노동능력상실률은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

15) 피보험자(본인 및 가족)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또는 탑승중 무보험차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경우 종합보험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의거 보상(출처 :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변천사」, 1997, 362면.)

16) 가정용자동차패키지보험 특별약관에서 담보하던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를 보통약관으로 흡수하였다.(출처 : 보험개발원, 앞의 책, 166면.)

17) 최병수, 앞의 책, 170면.

18) 최초 무보험자동차 상해는 “무보험자동차상해위험특별약관”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19) 당시에는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로 구분하지 않고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약칭 “자배책보험”)으로 명명하고, 대인배상Ⅱ 등의 임의보험은 종합보험이라 칭하였다.

20) 약칭으로 “자배법”이라 칭한다.

21)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의 과거 자배법에 의한 노동능력상실률 평가표와 같은 노동능력상실률 표를 고려하여 피해자의 성별, 연령, 직업, 후유증의 부위 정도 및 사고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한다.(출처 : 이윤호 외 1, 앞의 책, 138면.)

22)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이라 하지 않고 맥브라이드식 간이 장해평가방법이라 칭하는 이유는 맥브라이드 원저는 직업이나 연령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는 반면 자동차보험약관에서는 육내 또는 육외근로자를 기준으로만 판단하고 있어서이다.

방법에 따라 일반의 육내 또는 육외 근로자를 기준으로 의사가 판정한 타당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다.<sup>23)</sup>

## 2. 무보험자동차상해 지급보험금의 계산

무보험자동차상해의 지급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인정하는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여 계산한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0조에 따르면 무보험자동차상해 지급보험금은 “지급보험금 =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 비용 - 공제액”의 산식에 의해 계산한다.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 가. 대인배상 I (책임공제 및 정부보장사업을 포함)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 나. 자기신체사고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다만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 다. 배상의무자<sup>24)</sup>가 가입한 대인배상 II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 라. 피보험자가 탑승 중이었던 자동차가 가입한 대인배상 II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 마.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 바.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할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이미 지급받은 금액

## 3. 무보험자동차상해의 성격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23) 현행 약관에서 “실질적으로 부상 치료 진단을 실시한 의사 또는 해당과목 전문가가 진단 판정한 타당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며, 그 판정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으로 내용을 추가하여 변경한 것은 장해평가와 관련된 분쟁을 줄일 목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24) “배상의무자”라 함은 무보험자동차로 인한 생긴 사고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비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은 상해보험으로서의 성질과 함께 손해보험으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이므로, 하나의 사고에 관하여 여러 개의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계약이 체결되고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손해보험에 관한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되어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이 경우 각 보험자 사이에서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 보상책임을 진다. 25) 26)

무보험자동차상해의 성격에 대하여 손해보험설 상해보험설 손해전보형 상해보험설이 있다. 위 판례는 손해전보형 상해보험설을 따르고 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의 성질을 손해보험으로 보는 경우 상법제682조의 법정대위가 인정될 것이나 상해 보험으로 보는 경우에는 약정대위가 인정될 것이므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의 법적 성질을 규명하는 실익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은 일반규정으로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자기신체사고를 제외하고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는 보험규정을 두고 있어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의 경우에도 보험자대위가 인정되고 있다. 27)

결국 무보험자동차상해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든 실질적인 실익은 크지 않을 것이다.

#### 4. 무보험자동차상해 보험금지급기준의 유효성

대법원은 “당사자사이에 보험약관을 기초로 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험약관은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된 것으로서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 11. 26. 선고 84다카 2543 판결, 1999. 11. 14. 선고 88다카 29177 판결 각 참조) 무

25) 김하늘, "대법원 2005다35516 판례", 대법원판례해설 63호(2006 하반기), 법원도서관, 29면.

26) 대법원 2006. 11. 19. 선고 2005다 35516 판결.

27) 손원락,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의 법적 성질과 보험자대위 관련 시효문제 대법원 2005. 10.7. 선고 2005다38928 판결의 원심판결인 대전고등법원 2005.6.17. 선고 2005나525 판결을 중심으로”, 실무연구자료 7권 대전지방법원, 103면.

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의 보험자인 피고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의 배상의무자가 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위험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보통약관에 정한 별표1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제한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다.<sup>28)</sup>

다수의 판례가 무보험자동차상해의 지급 보험금의 범위가 법률상손해배상책임액인 실제손해액이 아니고, 보험금지급기준에 한정된다는 의견이고 무보험자동차상해에 부과되는 보험료의 정도 및 제도 도입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보험금지급기준의 범위를 보험금지급기준에 한정하는 것은 타당한 의견으로 생각되나, 현재의 비현실적인 보험금지급기준의 개정은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5. 무보험자동차상해 장해평가방법에 관한 판례

무보험자동차상해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하면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무보험자동차상해의 보험금지급기준상의 장해평가방법이 맥브라이드식으로 한정되는지에 대해 서울고법은 “우 견갑관절의 유착성 관절낭염 등으로 인한 관절강직(맥브라이드 포 관절강직 II-A-4항)으로 사고일로부터 3년간의, 좌 고관절(맥브라이드 포 관절강직 II-A-1항) 및 완관절(맥브라이드 포 골절 I-4-d항)의 동통, 관절의 운동제한 등의 후유장해가 남게 되어 위 사고일로부터 3년간은 도시일용노동자로서 22.6%, 그 후부터 가동연한까지는 14.9%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고, 얼굴의 반흔과 변형으로 인하여 성형수술 후에도 현저한 추형이 남게 되어 약 15%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판시하였다.<sup>29)</sup>

위 판결의 장해 인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 견갑관절과 고관절 및 완관절의 강직장해에 대해 맥브라이드포의 도시일용근로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였고, 추상장해의 경우 국가배상법을 적용하여 인정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sup>30)</sup>

28) 대법원 2001.12.27. 선고 2001다55284 판결.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 19307 판결 등 다수 판결도 같은 의견임.

29) 서울고법 2003. 11. 18. 선고 2003나 16377 판결.

30) 판결은 추상장해에 대해 “원고는 추형으로 60% 노동능력상실률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고 신체감정축타결과에 의하면,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2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능력상실률표의 장해등급 7급 12호에 해당하여 60%의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인정하였으나, 위 원고가 여자인 점, 위 원고의 나이와 직업, 추형이 남게 되는 부위와 크기 등을 조합하면 이로 인하여 약15%의 노동능력이 상실

위 판결에 따르면 무보험자동차상해의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방법이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에 의한 옥내와 옥외 근로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직업을 고려할 수 있음과 추상장해 등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에 없는 장해는 타법의 평가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이 판례가 대법원 판례가 아니고, 보험금지급기준의 맥브라이드식에 의한 간이평가방법을 배제한 이유 또는 수정 해석한 이유에 대해 실시하지 아니한 점이 부족한 점이라 할 것이다.

## 6. 자동차상해<sup>31)32)</sup>의 장해평가방법에 관한 판례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르면, 대인배상, 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보험금지급기준이 동일하므로, 자동차상해의 보험금지급기준에 관한 판례는 약관 해석의 문제이므로 무보험자동차상해의 보험금지급기준과 동일시하여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을 원칙적으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에 의할 것을 규정하였으나, 그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제3의 전문의료기관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반드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만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에 추상장해에 대한 해당 항목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추상장해를 노동능력상실률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심히 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제3의 전문의료기관 전문의라 할 수 있는 이 사건 감정사가 원고의 안면부 추상으로 15%의 영구장해가 있다는 의견을 제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면서, 추상장해의 인정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 31) 자동차상해는 자기신체사고를 확장한 것으로서 보험계약자는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고, 자동차상해 담보에 가입할 경우 자기신체사고 담보는 가입할 수 없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자동차상해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을 보상한다.
- 32) 자동차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이나 부상보험금 또는 후유장애보험금 등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인보험의 일종이기는 하나,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부로부터 생긴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 그 결과에 따라 보험약관에 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이어서 그 성질상 상해보험에 속한다.(출처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추상장해는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인 노동능력의 상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노동능력상실률은 이 사건 감정촉탁결과에 따라 15%로 봄이 상당하다.<sup>33)</sup>”고 판시하였다.<sup>34)</sup>

## 7. 무보험자동차상해 보험금지급기준의 해석에 관한 판례

대법원은 무보험자동차상해 보험금지급기준에서의 일용근로자 임금 적용여부에 관하여 “보험금 지급기준이 되는 자동차보험약관의 규정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학생인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상실수익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일용근로자임금에 농촌일용노임을 배제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고, 비록 약관의 용어풀이란에 ‘일용근로자라 함은 통계법 제10조에 의한 통계작성승인기관(공사부분 :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분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 조사, 공표한 노임 중 보통인부의 임금을 말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약관에서 들고 있는 통계작성승인기관은 예시적으로 열거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역시 통계작성승인기관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행하는 농협조사월보에 의한 보통인부의 노임도 이에 포함된다고 함이 상당하다.” 판시하였다.<sup>35)</sup>

이 판결의 의미는 무보험자동차상해의 보험금지급기준의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 약관의 기재내용에 대해 폭넓게 인정하여야 함을 보여준 판결이라 하겠다. 즉 무보험자동차상해 약관의 내용에 대한 수정해석이 가능하다고 판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8. 무보험자동차상해의 가입조건에 따른 장해평가방법의 해석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에 모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다.<sup>36)</sup>

33) 서울중앙지법 2012. 7. 16. 선고 2011가단 470040 판결.

34) 외에도 생긴 추상장애와 노동능력 상실 여부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위 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사실만으로는 바로 육체적인 활동기능에는 장애를 가져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애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이 없다 할 수는 없으므로 그 경우에는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출처 : 대법원 1991.8.27. 선고 90다9773 판결).

35)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다 9915(본소), 2001다 9922(반소) 판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담보에 가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에 가입하여야 하는데, 자기신체사고에 가입을 요구하는 이유는 이 보험의 성격이 일종의 상해보험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자기신체에 대한 손해를 담보하지 않는 가입자에게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손해나 다른 차량 운전에 의한 사고에 대해 자기신체에 대한 위험을 담보한다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다.<sup>37) 38)</sup>

자기신체사고의 장해보험금은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이 아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후유장해등급분표에 의한 한도액을 정하여 보상하고 있다.<sup>39) 40)</sup> 그런데 무보험자동차상해의 장해평가방법은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만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서 보상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추가로 가입한 무보험자동차상해가 가입전제조건인 자기신체사고보다 더 보상의 폭이 좁아지는 결과를 발생시켜 논리적 모순이 생긴다.

## 9. 무보험자동차상해 처리 과정

실무에서는 무보험자동차상해에 가입한 피보험자의 자동차보험회사가 무보험자동차상해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한 보험금을 피보험자에게 선지급하고 무보험자동차가 가입한 대인배상 I 의 자동차보험회사를 상대로 지급한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대위권을 행사한다.<sup>41)</sup>

36)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대인배상 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에 모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7) 남원식 외 6인 「자동차보험약관개정 증보판」, 한울출판사, 1998, 339면.

38) 무보험자동차상해에 가입하면 자동차부대약관으로 다른 자동차운전담보특별약관에 가입되어 약관에 규정된 피보험자는 다른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에도 자기차량의 대인배상이나 자기신체사고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다.

39) 1986. 9. 8. 이전 약관에서 적용되던 자배법에 의한 후유장해평가방법이 대인배상 I 과 자기신체사고에서 한도액을 정하는 기준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40)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15조 자기신체사고의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1. 생략
2. 생략

3. 후유장해 :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남을 때에는 별표3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지급기준”의 2) 후유장해 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해등급별 보험금액을 한도로 한다.

41) 실무에서 대부분 대인배상 I 을 처리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하여 무보험자동차상해의 보험금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무보험자동차상해의 자동차보험에서 선처리를 한다. 그 이유는 선처리 후 구상

이 경우 피보험자에게 추상장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무보험자동차상해의 자동차보험회사는 무보험자동차상해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하면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 방법에 추상장해를 인정하는 항목이 없기 때문에, 피보험자에게 추상장해의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게 되고, 대부분 그대로 사건이 종결되어 피보험자는 추상장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측 자동차보험회사의 대인배상 I 에 추상장해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면, 피보험자가 추상장해의 손해를 전보 받을 수는 있겠으나, 실질적으로 그 정도의 손해사정 지식을 가진 피보험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측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I 에서 먼저 장해보험금을 받고 나중에 대인배상 I 을 초과하는 금액을 자기가 가입한 무보험자동차상해에 의한 보험금을 청구하더라도 문제점은 발생된다. 무보험자동차상해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하면, 대인배상 I 이나 자기신체사고에서 지급된 금액은 공제하고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무보험자동차상해에서는 추상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추상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대인배상 I 이나 자기신체사고의 보험금을 전액 공제할 경우, 피보험자는 결국 추상장해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무보험자동차상해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동차보험회사가 대인배상 I 등에서 지급받은 추상장해의 보험금은 공제하지 아니한다면 피보험자가 손해를 면할 수 있겠으나 과연 실무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지켜질지는 의문이다.

## IV. 개선안

### 1. 약관의 개정

실무에서 무보험자동차상해에서 추상장해 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무보험자동차상해의 장해평가방법으로 맥브라이드식 이외의 평가방법도 인정하는 판례와 상품도입배경 및 형평성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다.

무보험자동차상해의 보험금지급기준의 유효성에 대해 대법원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의 보험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의 배상의무자가 법률상손해

---

금을 확보하는 것이 구상금 환입 실적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배상책임은 지는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위험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보통약관에 정한 별표1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제한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sup>42)</sup>하였다.

무보험자동차상해의 경우 상대방이 피보험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액의 개념을 상정할 수도 있으며, 바로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보험제도의 취지이기도 하나, 보험금의 지급기준이 상대방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액을 논리적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 어떠한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할 것인지는 그와 같은 보험상품을 마련한 보험정책의 문제일 뿐이라는 점, 약관의 보험금의 지급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담보되는 위험의 범위가 달라지고, 이에 따라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달라질 뿐이며, 약관규정과 같이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은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보험금을 원칙으로 하고 소송이 제기된 경우 판결금액에 따르도록 하면서,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의 경우는 소송이 제기된 여하를 구별하지 않고 [별표 1]만을 기준으로 정하더라도 보험제도의 체계상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 따라서 결국 보상의 범위는 보험금의 지급기준을 조절함으로써 피보험자 보호의 목적과 적정한 보험료의 유지를 조절하는 선에서 정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보험금 지급기준을 대인배상에서의 지급기준과 달리 정한 약관이 피보험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거나 그 권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공정성을 상실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sup>43)</sup>

따라서 무보험자동차상해의 보험금지급기준을 피보험자 보호를 전제로 하더라도 대인배상과 같이 지급보험금을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을 원칙으로 하고, 소송이 제기된 경우는 “확정판결금액”에 따르도록 규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라 할 것이다.

일본의 약관은 우리와 달리 무보험자동차상해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불하여야 할 손해의 액은 배상의무자가 법률상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손해배상책임액에 의하여 정한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 보험금은 피보험자동차의 대인배상보험의 보험금액과 같은 금액이고, 다만 대인배상보험의 보험

42) 대법원 2001.12.27. 선고 2001다55284 판결 외 다수.

43) 서명수, "가정용자동차패키지보험의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에 의한 보상의 범위," 대법원판례해설 26호(1996.12.), 180~181면.

금액이 무제한으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2억 엔을 한도로 한다고 한다.<sup>44)</sup>

판례와 약관의 규정 및 무보험자동차상해 처리과정 등을 분석한 결과 무보험자동차상해의 장해평가방법이 맥브라이드식 간이 평가방법에 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입증되었다할 것이다. 다만, 실무적으로 이러한 점을 무보험자동차상해의 피보험자가 인식하고 자기의 권리를 찾는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고, 자동차보험회사나 보상실무에 종사하는 담당자가 피보험자 보호를 위해 피보험자에게 무보험자동차상해의 장해평가방법이 맥브라이드식 간이 장해평가방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추상장해, 후각장해 등은 다른 장해평가방법에 의해서도 평가받을 수 있다고 안내할 것을 기대할 수도 없을 것이다.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있고, 이의 해결을 위한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다. 조만간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의 불합리한 점 등을 개선한 새로운 장해평가방법이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sup>45)</sup>

향후 새로운 장해평가방법이 개발되고 시행되더라도 무보험자동차상해 보험금지급기준에서 장해평가방법으로 맥브라이드식 간이 장해평가방법을 계속 채택한다면 무보험자동차상해 장해평가방법의 문제는 앞으로도 상존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현행 무보험자동차상해 장해평가방법에 대하여는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타법에 의한 장해평가방법도 가능한 것으로 약관을 개정하였으면 한다.

## 2. 불필요한 합의서 작성 관행의 폐지

실무상 배상책임보험이 아니고 순수손해보험인 화재보험에서는 보험가입자의 재물이 손해를 입은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고, 제3보험의 보험금 지급시에도 또한 합의서라는 서식을 이용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지는 않다.<sup>46)</sup>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지급내역에 대하여 설명하고

44) 여미숙,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과 약관의 명시·설명무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7302 판결”, 상사판례연구 VI권(2006. 3.), 349면.

45) 우리나라 법원과 자동차보험약관의 장해평가기준이라는 점에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이 현실적으로는 가장 보편적이고 공신력 있는 장해평가방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출처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위원회, 앞의 책, 5면.)

46) 실무상 제3보험에서는 “보험금지급확인서”, “보험금지급요청서” “손해사정동의서” 등의 제목으로 보험금 지급시 확인서를 징구하고 있으며, 이는 추후 민원방지용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피보험자의 요청에 의해 보험금지급내역서 등을 제공할 뿐이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을 비롯한 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회사는 가해자인 피보험자를 대리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된다. 이때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로부터 합의의 소송 대행의 위임을 받아 처리한다든가, 피해자 직접청구권에 의해 합의당사자로서 가해자인 피보험자를 대리하게 된다.

무보험자자동차상해의 경우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는 피보험자이고, 대인배상의 경우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는 피해자이다. 따라서 무보험자자동차상해의 경우 피보험자와 자동차보험회사는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에 의해 보험금지급기준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다. 실무상 피보험자로부터 합의서를 받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아니하다.

무보험자자동차상해의 합의서 내용을 살펴보면 민법 제731조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는 화해의 정의와 사뭇 다르다. 피해자는 보험회사와 관계에 있어서 보험금 청구권자인 피보험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당연 보험금을 지급받을 자이고, 그 보험금은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당사자가 상호 양보할 사항도 없으며 보험회사의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지급은 합의의 대상 또한 아니다.

실무상 무보험자자동차상해 합의서 내용을 살펴보면 합의가 아니라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인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향후 대위권을 가해자측에게 행사할 때 필요한 내용들이 주로 기재 되어 있다. 즉 문구만 합의서로 되어 있고, 실제 내용은 합의서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무보험자자동차상해 장해보험금 지급 등에 대해 피보험자의 추가 보험금청구를 막을 목적으로 합의서라는 서식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47)</sup>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보험의 원리<sup>48)</sup>에 맞지 않고, 피보험자의 적법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47) 일부 자동차보험회사는 합의서라는 명칭 대신에 “약정서”라는 것을 피보험자로부터 징구하기도 하나, 대부분의 자동차보험회사는 합의서를 관행적으로 받고 있다.

48) 가해자인 피보험자를 보험자가 대리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배상책임보험의 경우만 합의서가 필요하다.

### 3. 감독기관의 제도개선 촉구

약관의 개정으로 무보험자동차상해의 모든 피보험자들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된다면 매우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무보험자동차상해 약관의 개정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제대로 권리를 찾지 못한 피보험자에게 불이익은 계속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약관개정에 앞서 무보험자동차상해에서 누락된 추상장해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보험금을 지급에 대한 감독기관의 지시와 불필요한 합의서 작성으로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기회를 박탈하는 관행을 철폐하기 위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무보험자동차상해에서 추상장해 등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민원의 통계도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무보험자동차상해에 의한 보험금청구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과 달리 그 발생비율이 높지는 않아, 추상장해 등 누락된 장해에 대한 보험금의 미지급은 많지 않을지 모르나, 형평의 원칙상 이 점은 꼭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 V. 결론

무보험자동차상해 장해평가방법을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에 한정하지 않고, 폭 넓게 인정하더라도 그에 따른 손해액의 증가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법원의 신체감정의사들도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새로 제정한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인 KAMS Guides<sup>49)</sup>에 의해 판단하는 경우가 많고, 국가배상법에 의한 추상장해의 평가에 대해서도 국가배상법을 그대로 원용하지 않고 피해자의 성별, 직업별에 따른 타당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고 있는 추세<sup>50)</sup> 등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이 더 큰 손해가 될 수도 있고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 수도 있을 것이다. 법원 신체감정의사들이 여러 장해평가방법 중 타당한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방법을 찾지 않고 관행적으로 맥브라이드식

49) 이 기준에 의하면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 보다 더 적게 평가되고 있다.

50) 국가배상법에 60%로 규정된 추상장해를 판결에서는 15%로 적용하였다.

만 고집하는 경향은 자동차보험약관에 장해평가방법으로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 방법만 따르도록 규정한 것도 일조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자동차사고 위험은 개인위험이라기 보다는 사실상 사회전반에 걸치는 사회위험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자동차의 대수도 과거에 비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자동차보험 시장도 많이 확장되었다. 이러한 기조 속에 무보험자동차상해가 기여한 비는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최근 자동차보험 대인배상I 이 담보하는 장해I급과 사망보험금의 한도액이 최근 1억 5천만원으로 상향되었다. 무보험자동차상해는 대인배상I 만 가입된 무보험자동차의 피해자를 구제할 목적으로 실시되었다.<sup>51)</sup> 무보험자동차상해의 한도액이 현재처럼 2억원에 머무른다면 실제로 무보험자동차상해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은 5천만원으로 그 효용성은 적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향후 피보험자 보호의 목적과 적정한 보험료의 유지를 조절하는 선에서 한도금액을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고의 취지는 무보험자동차상해의 발전방향이나,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의 불합리한 점의 개선방안이 아니다. 그 점에 관한 선행연구는 많은 편이다. 이 논문은 무보험자동차상해가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을 채택함으로써 장해평가방법에서 누락된 추상장해 등을 입게 된 피보험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기술하였다. 외국의 경우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개발한 평가방법을 채택하고 있어서 국내의 사정과 다르다.

무보험자동차상해의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은 정형외과적 평가에 치우쳐 있고, 직업이나 연령 등을 고려하지 않고, 현대의 의학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추상장해 등 누락된 평가가 많은 점 등의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 평가방법은 1986년 자동차보험약관에 편입된 이후 지금까지 사용되어 왔고, 소송실무에서도 많은 신체감정의사들이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을 원용하여 신체감정을 하고 있는 점 등 그 효용성 또한 큰 점이 많다.

본고는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무보험자동차상해에 대한 비판이 아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판례 등에서는 국가배상법 등 타법에 의한 장해평가방법이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보험자동차상해 보상실무에서는

51) 대인배상I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무보험자동차상해에서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보장사업에서 처리한다.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상장해 등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에 대한 보험금지금액수가 달라지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지적하고자 함에 있다.

또한 무보험자동차 보상실무에서 무보험자동차상해가 배상책임보험이 아니고 피보험자와 보험회사는 합의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작성함으로써 잘못 지급되었거나 누락된 장해보험금에 대한 피보험자의 추가보험금 청구 기회를 박탈하고 있음을 개선하기 위함에 있다.

향후 무보험자동차상해가 제도적으로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해본다.

## 참고문헌

- 김광국, 「자동차보험대인손해사정론」, 보험연수원, 2015.
- 김택수, 「산재 손해배상실무(제3권)」, 진원사, 2010.
- 김하늘, "대법원 2005다35516 판례", 대법원판례해설 63호, 2006 하반기.
- 남원식 외 6인, 「자동차보험약관개정·증보판」, 한울출판사, 1998.
-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변천사」, 1997.
- 서경희, "맥브라이드방식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과 연령의 고려, 재판과 판례 15집, 2007.
- 서명수, "가정용자동차패키지보험의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에 의한 보상의 범위," 대법원판례해설 26호(1996.12.).
- 손원락,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의 법적 성질과 보험자대위 관련 시효문제 대법원 2005.10.7. 선고 2005다38928 판결의 원심판결인 대전고등법원 2005.6.17. 선고 2005나525 판결을 중심으로", 실무연구자료 7권 대전지방법원.
- 여미숙,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과 약관의 명시·설명 의무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7302 판결", 상사판례연구 VI권(2006. 3.).
- 이운호 · 이천성, 「한일 자동차손해배상비교」, 한국손해사정사회, 2007.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위원회,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 가이드」, 2008.
- 최병수, 「자동차보험 손해사정이론과 실무」, 현대정보문화사, 2000.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 대법원 1991.8.27. 선고 90다9773 판결.
-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 19307 판결.
-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다 9915(본소), 2001다 9922(반소) 판결.
-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5284 판결.
- 대법원 2001.12.27. 선고 2001다5284 판결.
- 대법원 2001.12.27. 선고 2001다5284 판결.
-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7302 판결.

200 保險法研究 10권 1호 (2016)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대법원 2006. 11. 19. 선고 2005다 35516 판결.

서울고법 2003. 11. 18. 선고 2003나 16377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2. 7. 16. 선고 2011가단 470040 판결.

<Abstract>

## **A Study on the disability evaluation methods of the uninsured motorist coverage**

**HoeYoung-Yan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search the disability evaluation methods in the uninsured motorist coverage.

The uninsured motorist coverage is an auto insurance policy, which is the compensation contract to pay the killed or the injured in an accident caused due to uninsured car.

The uninsured motorist coverage payment is calculated by auto insurance payment standard.

Especially the disability payment is specified by disability rate, so the disability rate decision methods are very important.

McBride disability method is applied to the auto insurance payment standard.

This method has raised many problems because of unreasonable acts.

It has been maintained during 30 years from 1986 without improvement.

Despite of this defect, this is the unique disability assessment in the uninsured motorist coverage.

Practically the disability rate in lawsuit is determined by medical expertise.

Legal advise doctors use the various evaluation methods - AMA guides, National Compensation Act, for example) in case of estimating the disability rate in the medical expertise.

But the medical expertise is not used to the uninsured motorist coverage because of insurance terms.

New disability evaluation methods will be developed in the near future but it is not sure.

So I have tried to make this paper as practical interest for finding solution to improve.

I proposed to delete the phrase of McBride evaluation methods

and to use the various evaluation methods.

This study suggested a new direction of the uninsured motorist coverage disability evaluation as the practical aspects more than theoretical side.

I hope this paper to contribute the renewal disability evaluation improvement in the uninsured motorist coverage.

**Key Words** : the uninsured motorist coverage, auto insurance payment standard, the disability evaluation methods, McBride disability evaluation, disability payment